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14.8.29.>

격리 · 억류 · 이동제한 · 소독 · 교통차단 · 출입통제 명령서

제 2023-10 호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시설</td><td colspan="5">시설명 관내 시설출입차량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소재지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소유자
(관리자)</td><td colspan="3">성명</td><td colspan="2">생년월일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주소</td><td colspan="2">전화번호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명령의 내용</td><td colspan="3">명령의 구분 소독</td><td colspan="2">명령의 이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
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이행장소 '23. 4. 이후 고병원성
조류인플루엔자 확진으로
설정된 방역지역</td><td>이행기간
'23. 4. 6. ~
방역지역 해제 시</td><td colspan="2">대상 두수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명령대상</td><td rowspan="2">가축</td><td>축종</td><td>품종</td><td>성별</td><td>연령</td><td>귀표(개체)
번호</td><td>특징</td><td>비고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사람</td><td colspan="6">관내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</td></tr>
<tr><td>차량</td><td colspan="6">관내 시설출입차량</td></tr>
<tr><td>준수사항</td><td colspan="6">상기 기간 중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 관련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기 전,
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.
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,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
소독하여야 하며,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의 소유자 · 종사자 등에게
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.
시설출입차량은 방문하려는 가금농장의 내부(울타리 안쪽)로의 진입 여부와 관계
없이 동 명령의 적용대상임.
(예외기준) 농식품부에서 별도 지정 · 통보한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으로
살아있는 가금을 운송하는 경우,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해당 도축장에
진입할 수 있음(단,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은 방문한 농장에서 서명한
소독확인증을 보유하여야 함).</td></tr>
</table>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1항(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 · 억류 · 이동제한 · 소독 · 교통차단 · 출입통제를 명합니다.

2023년 4월 6일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 

유의사항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1항(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 따른 격리 · 억류 · 이동제한 · 소독 · 교통차단 · 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